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2883

제출일자 : 2026. 9. 28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이 폐지되고 관련 제도가 현행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, 종전 법체계를 전제로 규정한 경비 부과·징수 및 농지개량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, 「농어촌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6. 8. 20. ~ 2026. 9. 9.)결과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 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농촌근대화촉진법」 [시행 1996. 6. 30.] [법률 제5077호, 1995. 12. 29., 타법폐지] 농촌근대화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법률 제5077호, 1995. 12. 29.> (농지개량조합법)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률의 폐지)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. <단서 생략>
제3조 (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.
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.
제4조 생략
제5조 (기반정비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기반정비사업 및 기반시설로 본다.
제6조 (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.
제7조 (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

□ 「농어촌정비법」

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제9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,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.\
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저수지의 개수·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) 시행계획을 공고하고,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

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3. 3. 28.>
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,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3. 3. 28.>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3. 23.>

제10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)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"한국농어촌공사"라 한다)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11.>

현행조례전문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법 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0. 11. 10)

제2조(경비부과 등) ①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부역, 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.(개정 2000. 11. 10)

②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, 기채원금, 이자 및 기타 필요한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품과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③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한다.

④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⑤경비는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3조(농지개량계) ①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.

②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.